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66호 2022. 2. 17.(목)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2-205호 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 사천시 공고 제2022-223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2
- 사천시 공고 제2022-229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 사천시 공고 제2022-230호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3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2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공고 ————— 43
- 사천시 공고 제2022-225호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 47
- 사천시 공고 제2022-234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57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공고 제2022 - 205호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보호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14, FAX: 831-6029)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2. .
제 출 자: 민원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보호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행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2. 17. ~ 2022. 3. 10.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천시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근로자

다.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제6조(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기준 (제5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 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 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제5조제1항 제2호	50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1항 제3호	1시간	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제5조제1항 제4호		‘민원응대 공무원 법률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 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1항 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제8조	예산의 범위 내	

관 련 법 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공고 제2022 - 223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천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8조)

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추가(안 제1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1,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천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 18조)
- 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추가(안 제19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지방공기업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2. . ~ 2022. 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직원의 임면)”을 “(직원의 임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2항에서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직원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게 의뢰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직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11.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u>시</u>에서 출자한다.</p> <p>② (생 략)</p> <p>제18조(<u>직원의 임면</u>)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p>1. ~ 9.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자본금) ① ----- ----- <u>사천</u> <u>시(이하 “시” 라 한다)</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u>직원의 임면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이사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u></p> <p><u>③ 이사장은 직원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게 의뢰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직원 채용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19조(사업)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u></p>

<p><신 설></p> <p><u>10.</u> 제1호부터 <u>제9호</u>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p> <p><u>11.</u> (생 략)</p>	<p><u>스화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u></p> <p><u>11.</u> <u>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u></p> <p><u>12.</u> ----- <u>제11호</u>----- -----</p> <p><u>13.</u> (현행 제11호와 같음)</p>
--	---

관 련 법 규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행정안전부)

Ⅲ. 직원의 인사

②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④ 시험의 방법

아. 시험실시 기관

-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소속 지방공사·공단의 장이 실시함
 - 다만, 지방공사·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공고 제2022-229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천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 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3,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

1. 의결주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천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2. . ~ 2022. 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게 의뢰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직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하는 부서장”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성과”를 각각 “성과계약”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제13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영 제 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사천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

-----.

② -----
----- 담당하는 팀장 -----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성과계약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성과계약 -----

-----.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

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략)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생략)

② (생략)

-----.

1.·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 지방공기업평가원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Ⅲ. 직원의 인사

②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④ 시험의 방법

아. 시험실시 기관

-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실시함.
-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공고 제2022-230호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정 인수인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위원회 활동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운영세칙(안 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

1. 의결주문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정 인수인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회 활동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운영세칙(안 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05조

나. 예산조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행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2. . ~ 2022. 3.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결과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 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공고 제2022 - 2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1. 통영~대전고속도로 41.8k(사천2터널 종점갱구부) 인근 도로구역 추가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7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업명	위치	편입면적	사업시행자 명칭(성명) 및 주소
통영대전선 41.8k(사천2터널 갱구부) 비탈면 보완공사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9-3	3,04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울곡동, 한국도로공사)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공람장소
2022년 02월 17일 ~ 03월 03일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사천시청 도로과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2. 02. 17. ~ 2022. 03. 03.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 타 : 본 열람내용은 향후 분할측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 055-831-3375),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055-711-6109), 고성지사(☎ 055-711-6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주 민 의 견 서

성 명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주 소			
제 출 일			
제 목			
내 용			

※ 붙 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주민의견서 중복 및 허위 제출 방지 등을 위한 본인 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 수집일로부터 도로구역결정고시일 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주민의견서 제출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의견서 미접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서명 또는 날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공고 제2022 - 225호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사 천 시 장

(단위: 억원)

읍·면	사업명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도로연장(km)			전체계획 사업량 (사업비)	2021년 사업량 (사업비)	2022년 사업량 (사업비)	2023년 사업량 (사업비)	2024년 사업량 (사업비)	2025년 사업량 (사업비)	장래계획 사업량 (사업비)
			기점	종점	계	포장	비포장								
사천읍	-	-	사천	사천	18.2	17.0	1.2	11.2 km (277.7)	-	-	-	-	-	11.2 km (277.7)	
정동면	-	-	정동	정동	36.2	34.6	1.6	25.95 km (729.6)	0.0 km (0.5)	-	0.1 km (3.0)	0.2 km (2.5)	0.9 km (20.04)	24.75 km (703.56)	
사남면	-	-	사남	사남	33.6	31.9	1.7	21.05 km (623.6)	0.0 km (0.5)	0.1 km (2.3)	0.1 km (2.5)	0.1 km (2.0)	0.5 km (7.0)	20.05 km (609.3)	
용현면	-	-	용현	용현	31.8	29.5	2.3	17.4 km (500.5)	-	-	0.1 km (2.7)	0.0 km (2.0)	0.2 km (5.0)	17.1 km (490.8)	
축동면	-	-	축동	축동	32.0	23.5	8.5	20.6 km (717.1)	-	0.0 km (0.2)	0.3 km (2.3)	-	-	20.3 km (714.6)	
곤양면	-	-	곤양	곤양	71.5	55.3	16.2	52.0 km (1,397.8)	0.4 km (5.5)	0.2 km (2.0)	0.0 km (1.5)	0.0 km (1.0)	0.3 km (8.0)	51.1 km (1,379.8)	
곤명면	-	-	곤명	곤명	60.8	51.3	9.5	47.65 km (1,505.2)	-	0.0 km (0.5)	0.0 km (2.0)	0.1 km (1.5)	0.1 km (1.0)	47.45 km (1,500.2)	
서포면	-	-	서포	서포	71.6	45.8	25.8	51.3 km (1,567.5)	0.2 km (4.0)	0.2 km (4.0)	-	-	0.0 km (1.0)	50.9 km (1,558.5)	
합계	-	-			355.7	288.9	66.8	247.15 km (7,319.0)	0.6 km (10.5)	0.5 km (9.0)	0.6 km (14.0)	0.4 km (9.0)	2.0 km (42.04)	242.85 km (7,234.46)	

※ 노선별 세부내용은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노선내역서” 참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노선내역서

읍면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도로연장(km)			전체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장래계획	
			기점	종점	계	포장	비포장	사업량 (km)	사업비 (억원)	사업 량 (km)	사업 비 (억원)	사업 량 (km)	사업 비 (억원)	사업 량 (km)	사업 비 (억원)	사업 량 (km)	사업 비 (억원)	사업 량 (km)	사업 비 (억원)	사업 량 (km)	사업 비 (억원)	
합 계 (사천시)					355.7	288.9	66.8	247.15	7319.0	0.6	10.5	0.5	9.0	0.6	14.0	0.4	9.0	2.0	42.04	243.05	7234.46	
소계(사천읍)					18.2	17.0	1.2	11.2	277.7	-	-	-	-	-	-	-	-	-	-	11.2	277.7	
사 천 읍	장두선 (읍101)	장전리 산79-2	두량리 174-4	1.8	1.8	-	-	-	-	-	-	-	-	-	-	-	-	-	-	-	-	
	정화선 (읍102)	구암리 1344-2	화암리 772-2	1.6	1.2	0.4	0.4	23.0	-	-	-	-	-	-	-	-	-	-	-	0.4	23.0	
	추원선 (읍201)	두량리 1448-5	두량리 633-5	0.8	0.8	-	-	-	-	-	-	-	-	-	-	-	-	-	-	-	-	
	노웅선 (읍202)	장전리 산46-8	두량리 1589-19	3.0	3.0	-	1.8	59.0	-	-	-	-	-	-	-	-	-	-	-	1.8	59.0	
	백구선 (읍301)	구암리 783-2	구암리 185	1.7	1.7	-	1.5	33.0	-	-	-	-	-	-	-	-	-	-	-	1.5	33.0	
	토둔선 (읍302)	구암리 1821-34	구암리 413-1	1.8	1.8	-	1.6	35.2	-	-	-	-	-	-	-	-	-	-	-	1.6	35.2	
	선고선 (읍303)	선인리 306-14	고읍리 369	0.7	-	0.7	0.7	13.4	-	-	-	-	-	-	-	-	-	-	-	0.7	13.4	
	장노선 (읍304)	장전리 663-2	장전리 산120	1.7	1.7	-	1.2	26.4	-	-	-	-	-	-	-	-	-	-	-	1.2	26.4	
	금우선 (읍305)	금곡리 167-2	금곡리 산79-1	1.5	1.5	-	0.5	11.0	-	-	-	-	-	-	-	-	-	-	-	0.5	11.0	
	둔웅선 (읍306)	두량리 708-1	장전리 2-2	3.6	3.5	0.1	3.5	76.7	-	-	-	-	-	-	-	-	-	-	-	3.5	76.7	
소계(정동면)					36.2	34.6	1.6	25.95	729.6	-	0.5	-	-	0.1	3.0	0.2	2.5	0.9	20.04	24.75	703.56	
정 동 면	고풍선 (정동101)	고읍리 561-4	화암리 317-6	3.0	3.0	-	1.8	59.0	-	-	-	-	-	-	-	-	-	-	-	1.8	59.0	
	고동선 (정동102)	고읍리 538-3	예수리 826-83	0.3	0.3	-	-	-	-	-	-	-	-	-	-	-	-	-	-	-	-	
	화암선 (정동103)	화암리 763-2	화암리 150	1.3	1.3	-	0.5	16.4	-	-	-	-	-	-	-	-	-	-	-	0.5	16.4	
	학감선 (정동104)	학촌리 235-1	감곡리 242-4	6.9	6.7	0.2	5.7	188.3	-	-	-	-	-	-	-	-	-	-	-	5.7	188.3	

	고수선 (정동201)	예수리 545-2 1	수청리 137-2	3.6	3.6	-	1.9	62.3	-	-	-	-	-	-	-	-	-	1.9	62.3	
	수청선 (정동301)	수청리 402-1	수청리 산51	0.9	0.8	0.1	0.9	19.5	-	-	-	0.1	2.0	0.1	2.0	0.4	3.0	0.3	12.5	
	예수선 (정동302)	화암리 816-1 5	예수리 산58-1	2.5	2.4	0.1	2.0	77.7	-	-	-	-	-	-	-	0.4	15.54	1.6	62.16	
	고장선 (정동303)	고읍리 536-4	대곡리 208-6	5.1	5.1	-	4.3	94.6	-	-	-	-	-	-	-	-	-	4.3	94.6	
	풍정선 (정동304)	고읍리 605-9 8	풍정리 산44	3.2	3.1	0.1	1.5	32.7	0.0	0.5	-	-	0.0	1.0	0.1	0.5	0.1	1.5	1.3	29.2
	장학선 (정동305)	장산리 894-1	학촌리 산95	4.2	3.8	0.4	3.5	75.9	-	-	-	-	-	-	-	-	-	3.5	75.9	
	소학선 (정동306)	소곡리 397-3	학촌리 164	1.4	1.4	-	0.95	20.9	-	-	-	-	-	-	-	-	-	0.95	20.9	
	예동선 (정동307)	예수리 165-4	고읍리 498-3	2.0	1.3	0.7	1.2	24.4	-	-	-	-	-	-	-	-	-	1.2	24.4	
	대산선 (정동308)	장산리 508-1 8	장산리 14	1.8	1.8	-	1.7	57.9	-	-	-	-	-	-	-	-	-	1.7	57.9	
	소계(사남면)			33.6	31.9	1.7	21.05	623.6	-	0.5	0.1	2.3	0.1	2.5	0.1	2.0	0.5	7.0	20.25	609.3
사 남 면	화방선 (사남101)	화전리 333-2	방지리 654	4.5	4.2	0.3	2.7	95.9	-	-	-	-	-	-	-	-	-	2.7	95.9	
	방유선 (사남102)	방지리 740	방지리 654	1.1	1.1	-	-	-	-	-	-	-	-	-	-	-	-	-	-	
	대종선 (사남201)	예수리 767	유천리 151-1	1.3	1.3	-	-	-	-	-	-	-	-	-	-	-	-	-	-	
	죽천선 (사남202)	죽천리 150-7 6	초전리 254-2	1.3	1.3	-	1.3	42.6	-	-	-	-	-	-	-	-	-	1.3	42.6	
	선초선 (사남203)	방지리 600	초전리 1000	2.0	1.8	0.2	2.0	64.8	-	-	-	-	-	-	-	-	-	2.0	64.8	
	죽화선 (사남204)	화전리 1602- 1	화전리 1619- 7	1.8	1.8	-	1.2	39.4	-	-	-	-	-	-	-	-	-	-	1.2	39.4
	연능선 (사남205)	우천리 1187	우천리 산198- 2	1.1	1.1	-	-	-	-	-	-	-	-	-	-	-	-	-	-	-

	사중선 (사남206)	사촌리 275-3	죽천리 340-7	2.6	2.6	-	1.2	39.4	0.0	0.5	0.1	2.0	0.1	2.5	0.1	2.0	0.4	5.0	0.5	27.4
	초전선 (사남207)	방지리 725	죽천리 172-2 1	1.2	1.2	-	-	-	-	-	-	-	-	-	-	-	-	-	-	-
	가천선 (사남301)	가천리 산35-6	가천리 339-3	0.6	0.6	-	-	-	-	-	-	-	-	-	-	-	-	-	-	-
	곡옹선 (사남302)	죽천리 150-5 1	선진리 187-1	1.7	1.4	0.3	1.4	30.0	-	-	-	-	-	-	-	-	-	-	1.4	30.0
	곡조선 (사남303)	초전리 17	초전리 208-5	0.9	0.9	-	0.9	19.8	-	-	-	-	-	-	-	-	-	-	0.9	19.8
	능우선 (사남304)	우천리 302-9	우천리 산204	2.3	2.3	-	1.4	48.4	-	-	-	-	-	-	-	-	-	-	1.4	48.4
	월병선 (사남305)	예수리 756-2	죽천리 108-2	1.4	1.1	0.3	1.0	32.7	-	-	0.0	0.3	-	-	-	-	0.1	2.0	0.9	30.4
	월상선 (사남306)	화전리 1156- 2	화전리 1433	1.8	1.8	-	1.1	24.2	-	-	-	-	-	-	-	-	-	-	1.1	24.2
	예의선 (사남307)	화전리 1091- 3	화전리 1056- 1	1.3	1.3	-	1.15	25.3	-	-	-	-	-	-	-	-	-	-	1.15	25.3
	구룡선 (사남308)	화전리 168-8	화전리 산79	1.9	1.9	-	1.9	41.8	-	-	-	-	-	-	-	-	-	-	1.9	41.8
	화전선 (사남309)	화전리 333-2	화전리 산14-1	1.2	0.6	0.6	1.1	26.4	-	-	-	-	-	-	-	-	-	-	1.1	26.4
	우천선 (사남310)	우천리 347-2	우천리 산86	1.8	1.8	-	1.8	63.0	-	-	-	-	-	-	-	-	-	-	1.8	63.0
	화예선 (사남311)	화전리 907-2	화전리 산171- 5	0.8	0.8	-	0.6	23.3	-	-	-	-	-	-	-	-	-	-	0.6	23.3
	송소선 (사남312)	사촌리 806-2	죽천리 76-3	1.0	1.0	-	0.3	6.6	-	-	-	-	-	-	-	-	-	-	0.3	6.6
유 현 면	소계(유현면)			31.8	29.5	2.3	17.4	500.5	-	-	-	-	0.1	2.7	-	2.0	0.2	5.0	17.1	490.8

	석은선 (용현101)	석계리 134-3	온정리 770-1	2.4	2.4	-	2.4	78.7	-	-	-	-	0.0	0.7	-	-	0.1	2.0	2.3	76.0
	구신선 (용현102)	구월리 567	선진리 157	5.9	5.6	0.3	5.4	175.9	-	-	-	-	-	-	-	-	-	-	5.4	175.9
	신촌선 (용현201)	신촌리 417-3	통양리 338-4	2.7	2.7	-	-	-	-	-	-	-	-	-	-	-	-	-	-	-
	신통선 (용현202)	화전리 1589-46	통양리 239-14	3.8	3.2	0.6	2.0	63.1	-	-	-	-	0.1	2.0	0.0	2.0	0.1	3.0	1.8	56.1
	구월선 (용현203)	송지리 212-5	석계리 산33-1	2.9	2.9	-	1.6	52.5	-	-	-	-	-	-	-	-	-	-	1.6	52.5
	부금선 (용현204)	덕곡리 394-1	금문리 443-2	1.1	1.1	-	0.2	6.6	-	-	-	-	-	-	-	-	-	-	0.2	6.6
	통선선 (용현301)	통양리 98-1	선진리 1116	1.5	1.5	-	-	-	-	-	-	-	-	-	-	-	-	-	-	-
	용덕선 (용현302)	용치리 502-3	덕곡리 394-1	3.5	2.6	0.9	2.7	56.9	-	-	-	-	-	-	-	-	-	-	2.7	56.9
	덕주선 (용현303)	주문리 929-6	주문리 101-3	3.0	3.0	-	1.0	22.0	-	-	-	-	-	-	-	-	-	-	1.0	22.0
	선진선 (용현304)	통양리 239-11	신복리 459-4	2.1	2.1	-	-	-	-	-	-	-	-	-	-	-	-	-	-	-
	주문선 (용현305)	송지리 362	대포동 445-4	2.9	2.4	0.5	2.1	44.8	-	-	-	-	-	-	-	-	-	-	2.1	44.8
축 동 면	소계(축동면)			32.0	23.5	8.5	20.6	717.1	-	-	-	0.2	0.3	2.3	-	-	-	-	20.3	714.6
	가신선 (축동101)	가산리 746	반용리 140-4	8.0	3.5	4.5	8.0	347.5	-	-	-	-	-	-	-	-	-	-	8.0	347.5
	가탑선 (축동102)	가산리 산72-9	탑리 695-1	3.2	2.5	0.7	2.1	86.2	-	-	-	-	-	-	-	-	-	-	2.1	86.2
	탑배선 (축동103)	탑리 산19-10	배춘리 818-3	3.4	3.4	-	-	-	-	-	-	-	-	-	-	-	-	-	-	-
	신상선 (축동201)	반용리 39-6	탑리 542	1.5	0.7	0.8	1.2	37.7	-	-	-	-	-	-	-	-	-	-	1.2	37.7
	탑리선 (축동202)	탑리 145-6	탑리 산152-	7.7	6.4	1.3	4.1	129.2	-	-	0.0	0.2	0.3	2.3	-	-	-	-	3.8	126.7

			1																	
배양선 (축동203)	배촌리 532-4	배촌리 67	0.7	0.7	-	0.5	16.4	-	-	-	-	-	-	-	-	-	-	-	0.5	16.4
반오선 (축동301)	반용리 297-3	반용리 391-2	1.3	1.3	-	0.7	15.4	-	-	-	-	-	-	-	-	-	-	-	0.7	15.4
구가선 (축동302)	가산리 1146	구호리 608-1 7	2.4	2.1	0.3	1.5	32.2	-	-	-	-	-	-	-	-	-	-	-	1.5	32.2
사중선 (축동303)	사다리 385	탈리 산78-4	2.2	1.4	0.8	2.2	46.2	-	-	-	-	-	-	-	-	-	-	-	2.2	46.2
가화선 (축동304)	검정리 53-4	가산리 979-1	0.7	0.7	-	-	-	-	-	-	-	-	-	-	-	-	-	-	-	-
가용선 (축동305)	반용리 731	가산리 120-7	0.9	0.8	0.1	0.3	6.3	-	-	-	-	-	-	-	-	-	-	-	0.3	6.3
소계(곤양면)			71.5	55.3	16.2	52.0	1397.8	0.4	5.5	0.2	2.0	-	1.5	-	1.0	0.3	8.0	51.1	1379.8	
곤 양 면	본고선 (곤양101)	환덕리 1152-5	환덕리 892-4 5	3.3	3.3	-	-	-	-	-	-	-	-	-	-	-	-	-	-	-
	묵탑선 (곤양102)	묵곡리 산139-7	가화리 990-5	5.4	5.4	-	2.2	72.2	-	-	-	-	-	-	-	-	-	-	2.2	72.2
	김중선 (곤양103)	검정리 22-1	중항리 41-2	2.8	1.9	0.9	2.8	161.3	-	-	-	-	-	-	-	0.0	1.0	2.8	160.3	
	후상선 (곤양201)	서정리 381	서정리 192-6	1.2	1.2	-	-	-	-	-	-	-	-	-	-	-	-	-	-	-
	당포선 (곤양202)	송전리 산73-1 0	송전리 528-1	4.1	4.1	-	2.9	95.1	-	-	-	-	-	-	-	-	-	-	2.9	95.1
	어묵선 (곤양203)	대진리 443-1 6	묵곡리 31-4	5.3	4.4	0.9	5.0	160.3	-	-	-	-	-	-	-	-	-	-	5.0	160.3
	환중선 (곤양205)	묵곡리 226-2	중항리 529-4	4.0	4.0	-	3.2	104.6	-	-	-	-	0.0	1.5	0.0	1.0	0.3	5.0	2.9	97.1
	환대선 (곤양206)	환덕리 1130-7	대진리 519-3	3.1	3.0	0.1	1.9	61.9	-	-	-	-	-	-	-	-	-	-	1.9	61.9
	돌제선	대진리	대진리	2.3	2.3	-	0.4	13.1	-	-	-	-	-	-	-	-	-	-	0.4	13.1

(곤양207)	산131-1	642-2																	
검가선 (곤양209)	검정리 산19-1 3	가화리 642	6.3	5.2	1.1	2.1	64.4	0.4	5.5	0.2	2.0	-	-	-	-	0.0	2.0	1.5	54.9
원검선 (곤양210)	검정리 509-3	검정리 산24-3	1.7	1.7	-	0.8	26.2	-	-	-	-	-	-	-	-	-	-	0.8	26.2
묵홍선 (곤양301)	묵곡리 354	홍사리 307-5	2.6	2.2	0.4	2.6	56.1	-	-	-	-	-	-	-	-	-	-	2.6	56.1
검아선 (곤양302)	묵곡리 195-3	검정리 313-3	3.3	3.0	0.3	3.1	67.4	-	-	-	-	-	-	-	-	-	-	3.1	67.4
본중선 (곤양303)	환덕리 897-8	중항리 529-2	4.6	1.2	3.4	4.6	91.7	-	-	-	-	-	-	-	-	-	-	4.6	91.7
안검선 (곤양304)	중항리 산78-1	중항리 484-3	5.0	-	5.0	5.0	96.0	-	-	-	-	-	-	-	-	-	-	5.0	96.0
석광선 (곤양305)	대진리 835-2	대진리 산66-6	2.2	2.2	-	1.1	24.2	-	-	-	-	-	-	-	-	-	-	1.1	24.2
상포선 (곤양306)	서정리 231-2	송전리 763	1.3	0.5	0.8	1.3	26.4	-	-	-	-	-	-	-	-	-	-	1.3	26.4
백계선 (곤양307)	백사리 459-1	대진리 1048-1	4.3	3.5	0.8	4.3	92.4	-	-	-	-	-	-	-	-	-	-	4.3	92.4
백무선 (곤양308)	백사리 402-8	무고리 456	3.1	2.7	0.4	3.1	67.1	-	-	-	-	-	-	-	-	-	-	3.1	67.1
고안선 (곤양309)	환덕리 1172-484	중항리 산143	3.5	2.7	0.8	3.5	74.8	-	-	-	-	-	-	-	-	-	-	3.5	74.8
검정선 (곤양310)	검정리 108-1 0	가화리 50-9	2.1	0.8	1.3	2.1	42.6	-	-	-	-	-	-	-	-	-	-	2.1	42.6
곤 명 면	소계(곤명면)		60.8	51.3	9.5	47.65	1505.2	-	-	-	0.5	-	2.0	0.1	1.5	0.1	1.0	47.45	1500.2
	신초선 (곤명101)	추천리 556-3	초량리 550-1	4.1	3.6	0.5	2.2	84.5	-	-	-	-	-	-	-	-	-	2.2	84.5
	오원선	추천리	봉계리	4.8	4.5	0.3	2.8	102.2	-	-	-	-	-	-	-	-	-	2.8	102.2

(곤명102)	44-15	925																	
삼정선 (곤명201)	삼정리 79-6	삼정리 437-1	2.0	2.0	-	-	-	-	-	-	-	-	-	-	-	-	-	-	-
은삼선 (곤명202)	은사리 22	삼정리 209	4.2	3.7	0.5	4.2	135.7	-	-	-	-	-	-	-	-	-	-	4.2	135.7
금양선 (곤명203)	마곡리 136-2	본촌리 322-4	3.5	3.5	-	3.5	114.8	-	-	-	-	-	-	-	-	-	-	3.5	114.8
성송선 (곤명204)	성방리 501-2	송림리 340-1	2.9	2.9	-	2.6	85.3	-	-	-	-	-	-	-	-	-	-	2.6	85.3
구작선 (곤명205)	작팔리 444-7	목곡리 1117	3.9	3.9	-	2.0	153.2	-	-	-	-	-	-	-	-	-	-	2.0	153.2
추평선 (곤명206)	추천리 645-2	용산리 84	1.9	1.9	-	0.6	46.0	-	-	-	-	-	-	-	-	-	-	0.6	46.0
매연선 (곤명207)	작팔리 149-2	신흥리 2-6	8.8	8.8	-	8.5	278.8	-	-	0.0	0.5	0.0	2.0	0.1	1.5	0.1	1.0	8.3	273.8
구만선 (곤명208)	작팔리 476-2 4	신흥리 868-1	3.9	3.9	-	3.5	114.8	-	-	-	-	-	-	-	-	-	-	3.5	114.8
성방선 (곤명301)	마곡리 산94-5	마곡리 616	1.4	1.4	-	0.3	6.6	-	-	-	-	-	-	-	-	-	-	0.3	6.6
신성선 (곤명302)	정곡리 813-1 0	성방리 817	3.4	1.2	2.2	3.2	70.6	-	-	-	-	-	-	-	-	-	-	3.2	70.6
초량선 (곤명303)	초량리 257-2	초량리 536-1	4.9	3.7	1.2	4.4	93.4	-	-	-	-	-	-	-	-	-	-	4.4	93.4
조매선 (곤명304)	성방리 201-8	성방리 산117	1.5	1.5	-	1.1	24.2	-	-	-	-	-	-	-	-	-	-	1.1	24.2
내성선 (곤명305)	성방리 산29-2	성방리 산71-1	2.3	1.1	1.2	2.3	47.2	-	-	-	-	-	-	-	-	-	-	2.3	47.2
조추선 (곤명306)	조장리 123	추천리 641-1 6	0.7	0.7	-	0.5	11.0	-	-	-	-	-	-	-	-	-	-	0.5	11.0
오사선	조장리	추천리	1.5	1.0	0.5	1.1	22.8	-	-	-	-	-	-	-	-	-	-	1.1	22.8

	(곤명307)	45	산46-7																		
	적정선 (곤명308)	작팔리 579-3	성방리 215-3	1.4	0.6	0.8	1.4	31.8	-	-	-	-	-	-	-	-	-	-	1.4	31.8	
	신송선 (곤명309)	정곡리 646-2 5	송림리 546	2.6	0.9	1.7	2.4	58.3	-	-	-	-	-	-	-	-	-	-	2.4	58.3	
	조장선 (곤명310)	종장리 291-1	조장리 382	0.5	0.5	-	0.45	9.9	-	-	-	-	-	-	-	-	-	-	0.45	9.9	
	추무선 (곤명311)	용산리 49	용산리 산11	0.6	-	0.6	0.6	14.1	-	-	-	-	-	-	-	-	-	-	0.6	14.1	
	소계(서포면)			71.6	45.8	25.8	51.3	1567. 5	0.2	4.0	0.2	4.0	-	-	-	-	-	1.0	50.9	1558. 5	
서 포 면	사다선 (서포101)	외구리 920-2	내구리 406-1	2.5	2.5	-	1.2	39.4	-	-	-	-	-	-	-	-	-	-	1.2	39.4	
	구검선 (서포102)	구평리 1245- 2	선전리 22-20	5.4	3.1	2.3	4.7	210.7	-	-	-	-	-	-	-	-	-	-	4.7	210.7	
	구다선 (서포103)	구평리 산76-6	다평리 991-4 9	2.8	0.5	2.3	2.8	148.4	-	-	-	-	-	-	-	-	-	-	2.8	148.4	
	자구선 (서포104)	자혜리 452-1	구량리 293-3 2	1.7	1.1	0.6	1.2	42.6	0.1	1.4	0.1	2.1	-	-	-	-	0.0	1.0	1.0	38.1	
	동삼선 (서포201)	외구리 250-2	외구리 572-4	2.8	0.9	1.90	2.7	80.8	-	-	-	-	-	-	-	-	-	-	2.7	80.8	
	굴내선 (서포202)	내구리 산78-9	내구리 94-3	2.3	0.8	1.5	1.5	43.1	-	-	-	-	-	-	-	-	-	-	1.5	43.1	
	구구선 (서포203)	구량리 864-3	구량리 133-5	5.5	2.5	3.0	3.7	109.1	-	-	-	-	-	-	-	-	-	-	3.7	109.1	
	대장선 (서포204)	조도리 557-2	조도리 산77-1	2.5	2.5	-	-	-	-	-	-	-	-	-	-	-	-	-	-	-	-
	구자선 (서포205)	구량리 308-7 5	자혜리 943	6.4	5.5	0.9	3.0	94.7	0.1	2.6	0.1	1.9	-	-	-	-	-	-	2.8	90.2	
	다평선 (서포206)	다평리 1249- 1	구평리 1181- 25	6.0	2.7	3.3	5.0	150.5	-	-	-	-	-	-	-	-	-	-	5.0	150.5	
	비송선	비토리	다평리	1.7	1.3	0.4	1.2	66.9	-	-	-	-	-	-	-	-	-	-	1.2	66.9	

(서포207)	255-1 8	47-2																		
선자선 (서포208)	선진리 684-2	자혜리 356-1 2	6.9	3.7	3.2	6.9	213.2	-	-	-	-	-	-	-	-	-	-	-	6.9	213.2
구조선 (서포301)	구평리 산73-2 1	외구리 1221- 13	6.3	3.8	2.5	4.8	98.6	-	-	-	-	-	-	-	-	-	-	-	4.8	98.6
서삼선 (서포302)	금진리 386-4	외구리 1474	2.5	2.0	0.5	2.5	56.8	-	-	-	-	-	-	-	-	-	-	-	2.5	56.8
금울선 (서포303)	금진리 242	금진리 640-5	2.2	2.2	-	2.0	44.0	-	-	-	-	-	-	-	-	-	-	-	2.0	44.0
다내선 (서포304)	다평리 570-2	내구리 540	1.6	0.8	0.8	1.6	33.0	-	-	-	-	-	-	-	-	-	-	-	1.6	33.0
다신선 (서포305)	다평리 1409- 1	다평리 59-3	2.4	2.4	-	2.0	44.0	-	-	-	-	-	-	-	-	-	-	-	2.0	44.0
구선선 (서포306)	구평리 614-2	자혜리 1163- 1	3.3	2.3	1.0	2.9	61.0	-	-	-	-	-	-	-	-	-	-	-	2.9	61.0
조구선 (서포308)	조도리 산20-2 1	조도리 27-2	1.6	-	1.6	1.6	30.7	-	-	-	-	-	-	-	-	-	-	-	1.6	30.7
다맥선 (서포309)	다평리 산131- 3	다평리 1273- 18	1.0	1.0	-	-	-	-	-	-	-	-	-	-	-	-	-	-	-	-
비토선 (서포310)	비토리 산11-1 1	비토리 119-1 78	3.0	3.0	-	-	-	-	-	-	-	-	-	-	-	-	-	-	-	-
자혜선 (서포311)	자혜리 620-2	자혜리 356-7	1.2	1.2	-	-	-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사천시 공고 제2022 - 234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안)

‘용수도로(지1002호)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2. 1. ~ 2023. 12.(24개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수도로(지1002호) 선형개량사업
- 사업예정지(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경남 진주시 초전북로 104)
- 사업 내용 : 도로 굴곡 개량(B=9.5m, L=380m)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사천시 도로과 도로계획팀
- 열람기간 : 2022. 02. 17. ~ 2022. 03. 03.(14일간)

사 천 시 공 보

제766호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02. 17. ~ 2022. 03. 03.(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포장담당(☎055-254-4623), 사천시 도로과 도로계획팀(☎055-831-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사천시 축동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가산리	산72-19	도	1,128	216	국토교통부	국	
2	〃	산72-7	임	1,153	73	국토교통부	국	
3	〃	438-2	전	13	13	박*실	***	
4	〃	산71-6	도	3,207	1,629	국토교통부	국	
5	〃	산72-31	임	12,792	52	윤*인	사천읍 선인리 ***-*** 전원맨션*동 ***호	
6	〃	산72-16	도	624	323	-	경상남도	
7	〃	산72-4	도	76	76	국토교통부	국	
8	〃	436-2	도	43	43	박**이	부산부 산정*정목	
9	〃	산72-3	도	50	25	국토교통부	국	
10	〃	1132	도	4,543	1,040	국토교통부	국	
11	〃	436-5	도	311	303	-	경상남도	
12	〃	436-6	전	54	54	조*균	진주시 상평동 ***-*** **국민주택* 차 가동 ***호	
13	〃	425-6	도	4	4	박*래	답리	
14	〃	436-3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	
15	〃	425-11	전	26	26	박*래	답리	
16	〃	산72-47	임	4	4	윤*인	사천읍 선인리 ***-*** 전원맨션*동 ***호	
17	〃	435-1	도	3	3	국토교통부	국	
18	〃	435-2	전	45	45	김*성	진주시 하대동 ***-***	
19	〃	산72-17	도	193	144	-	경상남도	
20	〃	425-7	도	363	40	국토교통부	국	
소 계				24,642	4,123			

연번	소재지 (사천시 축동면)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21	가산리	425-12	장	49	49	김*성	진주시 하대동 ***-***	
22	〃	산72-47	임	4	4	윤*인	사천읍 선인리 ***-*** 전원맨션 *동 ***호	
23	〃	431-4	전	981	973	김*성	진주시 하대동 ***-***	
24	〃	430-2	전	673	673	김*성	진주시 하대동 ***-***	
25	〃	425-13	장	91	91	김*성	진주시 하대동 ***-***	
26	구호리	산14-9	임	932	932	이*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리로 **번길 **, ***동 ***호(성주 동, 한림푸르지오)	
27	가산리	427	도	33	9	국토교통부	국	
28	구호리	산14-8	임	138	138	-	경상남도	
29	가산리	429-3	전	43	43	신*인	구호리 ***	
30	〃	429-5	전	109	109	신*인	구호리 ***	
31	구호리	269-2	전	38	38	지***드텍 주식회사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	
32	가산리	429-6	전	10	3	조*문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해창길 **	
33	구호리	산14-5	도	2,323	636	-	경상남도	
34	〃	산14-1	도	893	422	국토교통부	국	
35	〃	916	도	9,560	3	국토교통부	국	
소 계				15,877	4,123			

